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가단1271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2. 2.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5분의 2에 관하여 2021. 4.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162,5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162,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변경된 청구취지 제1의 다.항 2행의 '1/5 지분'은 '2/15 지분'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 판사 임윤한

별지1

부동산 목록

1. 경상남도 통영시 대 166㎡
2. 경상남도 통영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조적조 스라브및경량철골조착색아연도강판지붕 2층 주택
1층 70.84㎡, 2층 32.67㎡ 클.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고, 위 C 는 위 양수금 채무의 '채무자' 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C 의 상속분을 사해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 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C 는 2002. 6. 17. 소외 D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회원 약관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카드발급신청서 참조).

그런데 위 C 는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D 는 2005. 12. 20. 소외 주식회사 E 에게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E 은행은 2011. 4. 26. 소외 F 유한회사에게(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F []은 2019. 2. 22. 원고에게 C []에 대한 위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5, 6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한편 위 F []은 위 C []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13가소23874), 2013. 10. 18. 원고 승소의 재판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소의 C []는 원고에게 금 82,032,248원 및 그 중 금 16,696,098원에 대하여는 2022.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 (2) 그러므로 후술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항의 채권액인 82,032,248원입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 (1) 소의 C []의 아버지는 소의 망 G []인데, 위 G []는 2020. 6. 9. 경 사망하였고, 위 C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상속인 [] G []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G []의 상속인들 및 C []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

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1. 4. 27.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대법원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권리 포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실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인 소의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재산인데, 위 [C]는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음

으로써 무자력 상대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는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3)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 (1)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및 소의 C 사이의 2020. 6. 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 (2)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인

① 1996. 1. 16. 접수 제891호로 ‘채권최고액 1,7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갑 5-1, 2 각 율구 2번 참조),

② 1998. 10. 20. 접수 제22181호로 ‘채권최고액 1,1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갑 5-1, 2 각 율구 3번 참조),

㉓ 2002. 2. 27. 접수 제4509호로 '채권최고액 2,1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I'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갑 5-1, 2 각 을구 5번 참조),

가 각 마쳐졌었으나,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20. 12. 14. 모두 말소되었으며(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㉔ 2021. 5. 18. 접수 제10409호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I'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7번 참조).

따라서 본 사건은 사해행위위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원 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2022. 5. 10.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인 금 82,032,248원을 한도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상속지분 통의 특정

가. 피상속인 G는 2020. 6. 9.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와 자식들인 J, K, L, C(채무자), M와

장녀인 N은 그 이전인 1998. 1. 16. 사망하여, 그 대습상속인인 O, P이 있었습니다(대습상속인임).

[이상은 갑 제6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8호증 제적등본(G), 갑 제9호증 제적등본(O), 갑 제10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피고와 채무자 C는 모녀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2/15 입니다.

나. 위 G는 2020. 6.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1. 4. 27.인 바(갑 제10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위 2021. 4. 2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1/5 지분은 채무자인 C에게 상속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만이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갑 제9호증 참조).

2. 채무자 C의 무자력

가. 법원행정처의 2022. 8. 12.자 회선에 의하면, C는 2018. 12. 1.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1. 4. 27.)를 거쳐 조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없습니다(적극재산의 부재).

나. Q의 2022. 8. 11.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의하면, C는 위 사해행위 당시

① R에 각 금 80,000원(2002. 7. 12. 채무 등록), 금 4,428,000원(2003. 3. 20. 채무 등록), 금 20,000,000원(2003. 6. 23. 채무 등록),

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금 8,976,000원(2019. 6. 4. 채무 등록),

[위 회답서 중 '신용정보 조회 결과' 1쪽 참조]

[사해행위(2017. 12. 28.) 이전 채무가 발생하여, 조희일 현재 미변제된 채무들입니다]

③ 원고에 금 16,696,098원(원금 기준,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임)

등 **합계 50,180,09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위 채무는 이자는 제외한 '원금'만에 대한 것으로,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채무액은 더 클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이 적극재산은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C는 상속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 바, 그로 인해 C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전인 ① 1996. 1. 16. 채권최고액 1,700만 원,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1998. 10. 20. 채권최고액 1,100만 원, '근저당권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2. 2. 27. 채권최고액 2,100만 원, '근저당권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020. 12. 14. 모두 말소되었는데(갑 5-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말소 시점은 이 사건 사해행위(2021. 4. 27.) 이전인 바, 위 근저당권의 말소는 책임재산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이후인 2021. 5. 18.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 바(갑 5-1, -2),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뿐만 아니라 가액반환청구도 모두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02. 0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원고는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83,719,110원입니다(의 2022. 12. 15.자 회신 참조).

따라서 위 부동산 가액(83,719,110원) 중 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금 11,162,548원(83,719,110원 × 2/15)이 위 부동산에서 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다. 원고는 위 책임재산(11,162,548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82,032,248원, 갑 4 채권계산서) 중 더 적은 금액인 11,162,548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